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08

2017년 4월 26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4월 3일, 김미경 의원

2. 회부일자 : 2017년 4월 5일

3. 상정일자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7년 4월 26일 상정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미경 의원)

1. 제안이유

○ 학생운동부와 관련하여 획일적이며 비자율적인 훈련, 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요시 하는 인식으로 인하여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며 비교육적인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서울시의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수들이 행복추구권을 향유하도록 하며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7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3일 김미경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708호로 발의되어 2017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오늘날 학교체육은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과 ‘엘리트 체육 선수 양

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이로 인해 학교의 운동부는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요구되는 경기 실적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학생선수의 대회참가 및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학업능력 저하, 폭력 및 구타에 따른 인권침해, 운동 중단 후 진로 설정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러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규수업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출결상황과 대회 및 훈련 참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방침을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진학 및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것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타 법령 및 조례와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기적 연수 실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생선수를 위한 학업정보의 제공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의 경우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학교운동부지도자에 관한 의견(안 제6조)

○ 안 제6조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항)하는 한편, 교육 및 연수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안 제2항), 이와 같은 내용을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하여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3항).

○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전임코치와 각 종목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수익자부담으로 운용되는 일반코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55

개 종목에 908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표-1] 학교운동부지도자 현황

(기준 : 2016.7.1., 단위 : 명)

구 분	초	중	고	소계
전임 코치	121	159	123	403
일반 코치	127	204	174	505
합계	248	363	297	908

○ 이와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주로 학생선수에 대한 운동 지도, 학생선수의 인성 및 진로지도, 그리고 생활지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학생선수의 진로 및 진학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훈련계획은 학생선수의 수업참여 및 진로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 훈련계획의 수립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뿐만 아니라 이를 고려한 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의견(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교육감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선수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학생선수의

20.9%인 1,622명은 최저학력기준[1]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중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37.2%인 406명은 가장 많은 최저학력 미달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내 학생선수 중 운동을 중단한 중도 포기율은 평균 8.3%로, 최근 3년간 중도 포기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은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기준 미달과 중도 포기의 증가는 대회출전의 제한과 진학 진로목표 상실로 인한 학교의 부적응, 나아가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한 학생선수에 대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의 제공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문제가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체육건강과-6012)

[표-2]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 현황

(기준 : 2016년도 단위 : 명, 개)

학교급	학년	운동부 운영학교	학년별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과목수
				인원	비율(%)	
초	4	127	509	4	0.8	10
	5	136	773	30	3.9	42
	6	135	739	16	2.2	22

1) 서울시교육청 2017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 '최저학력제'
○ 최저학력 :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학기별 교과 평균성적에 50%(초), 40%(중), 30%(고) 미만인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 적용대상 : 초4~고3
○ 최저학력 교과 및 기준 성적
- 매 학기말 기준(지필평가+수행평가)
- 초·중학교(5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고등학교(3과목) ⇨ 국어, 영어, 사회
-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학기별 교과 평균성적에 50%(초), 40%(중), 30%(고)
※ 자유학기제 운영 학년은 한 학기만 적용

중	1	160	1,254	65	5.2	104
	2	161	1,320	459	34.8	975
	3	156	1,163	345	29.7	762
고	1	101	1,090	406	37.2	607
	2	97	895	297	33.2	437
합계			7,743	1,622	20.9	2,959

[표-3] 최근 3년간 학생선수 중도 포기 현황

(단위 : 명, %)

학교급	학생선수			중도포기선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중	3,773	3,793	3,812	252	6.7	258	6.8	318	8.3
고	2,681	2,819	2,846	184	6.9	209	7.4	236	8.3
합계	6,454	6,612	6,658	436	6.8	467	7.1	554	8.3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수립)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교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